

2015. 1. 29.

즈바이브뤼크 상급법원

NJW-RR 2015, 561

(연방헌법재판소 BvR 442/15 판결의 원심 판결)

#반론보도

#잡지 표지

#헤드라인

#출판자유

#숨겨진 사실주장

#무기대등원칙

질문 형태의 숨겨진 사실주장의 경우 반론보도청구¹⁾

라인란트팔츠 미디어법 제11조;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 제10조 제1항; 기본법 제1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주간지 표지 위의 유명인에 관한 보도 “그의 친한 친구에 관한 사망사건 - 그는 그를 당시에 구조할 수 있었을까?”는 반론보도가 가능한 사실적 내용의 표현이다.

즈바이브릭 상급법원, 2015년 1월 29일자 판결 - 4 U 81/14

사실관계

가처분신청인(이하 원고)이 가처분절차를 일방적으로 본안에서 처리된 것으로 선언한 이후, 당사자들은 그에 의해 법원의 도움으로 관철된 가처분피신청인(이하 피고)이 강제집행 조치의 회피 목적으로 이행했던 반론보도 게재에 대한 요구는 정당화 되었다. 원고는 독일 전역에서 유명한 언론인이자 TV 진행자이다. 피고는 주간지 W를 발행한다. 2012년 2월 29일자 발간물에서 피고는 표지 왼쪽 가장자리 중간에 원고의 사진을 전파하였다. 이 사진 옆에는 원고의 이름이 언급되었고, 그 아래 더 큰 활자체로 “J-그의 친한 친구에 관한 사망사건”이라는 보도 및 그 아래 작은 활자체의 질문 “그가 그를 당시에 구조할 수 있었을까?”가 게재되었다. 이에 속한 기사들은 잡지 안에서 표지에서 의 제목으로서 다시 반복되었다. 1982년 26살의 나이로 사망한 원고의 급우의 죽음을 다룬 기사는 또 다른 당시 동급생들의 관련 하에서 고인은 우선 협심증이 악화되면서 그 때문에 심장판막증을 얻게 되었다고 보도되었다; 심장판막은 그 이후 연쇄상구균에 의해 감염되었고 환자는 그 때문에 침대에 누워서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충고를 경솔하게 무시함으로써 심근경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보도 이후 원고는 피고에 문제된 표지보도를 재차 전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함부

1) 위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의 원심 판결

르크 지방법원에서 가처분을 통해 얻어냈다. 피고에 의해 제기된 함부르크 지방법원의 판결(2012년 8월 31일자-324 O 194/12, BeckRS 2015, 04378 - 이와 함께 가처분은 확정되었음)에 대한 항소를 함부르크 상급법원(2014년 7월 1일자 판결-7 U94/12, BeckRS 2015, 04379)은 기각했다. 원고의 소송 외에서의 반론보도 게재요청을 피고는 2012년 3월 13일자 변호사 서한과 함께 거부했다. 그로 인해 원고에 의해 진행된 프랑켄탈 지방법원(팔츠)(2012년 4월 24일자 판결-6 O 114/12, BeckRS 2014, 03075)은 피고에게 가처분 과정에서 라인란트 팔츠 미디어법 제11조에 따라 자세한 게재명령과 함께 반론보도 게재를 부과했다. 이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선고 재판부(2012년 9월 5일자 결정-4 U 72/12, BeckRS 2014, 03080)는 기각했다. 즈바이브릭 상급법원에 의한 2개(2012년 11월 6일자 결정-3 W 152/12, BeckRS 2014, 03081과 2013년 5월 6일자-3 W 42/13, BeckRS 2014, 03079)의 확정된 강제부과금 결정들과 연방헌법재판소를 통한 선행 권리보호의 허가 신청들(결국은 기각됨)에 따라 피고는 지방법원에 의해 확정된 바와 같은 반론보도를 2013년 7월 17일자 판의 표지 위에 게재했다. 반론보도문 다음에 피고는 스스로 한 번 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 “Y씨(원고)가 맞다. 편집부”.

피고의 헌법소원으로 연방헌법재판소 제1재판부 3지정부는 2013년 11월 4일자 결정(NJW 2014, 766)과 함께 민사법원의 결정과 관련한 반론보도청구를 선고절차와 강제집행절차에서 파기했고, 그 재판을 모두 프랑켄탈 지방법원(팔츠)로 환송하였다. 피고의 출판자유권의 침해 확정은 합의재판부에서 일반법원이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요청을 만족시키는 방식으로 질문 “그는 그를 구조할 수 있었을까?”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 즉 그 표현이 (반론보도가 가능하지 않은) 가치판단 혹은 사실주장을 내포하는지 여부에 대해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함께 정당화되었다. 이에 대해 행해진 2013년 11월 4일자 합의재판부에서 법률적용은 다음과 같이 확정했다 :

“반론보도청구는 본 건에서 단지 표지 위의 표현이 더 이상 단지 호기심을 일으키는 머리기사 질문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사실주장으로서의 명료성이 신청인이 그의 가장 친한 친구를 당시에 구조할 수 있었다는 정도로 규정될 수 있어야만 정당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을 공격된 판결에서 끄집어 낼 수 없고 이를 위해 사건에서도 역시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다...”

지방법원에서 계속된 소송에서 원고는 2013년 7월 17일자 반론보도 공표로 인해 가치분절차가 본안에서 종료된 것으로 선언하고 피고에 대해 비용을 신청했다. 피고는 본안종료선언에 항변했고 원고에 의해 주장된 반론보도청구권은 처음부터 부당한 것이었다는 법적 입장을 고수했다. 2013년 7월 17일자 반론보도를 그는 단지 선고된 강제금의 압박 하에서 공표했기 때문에 어떠한 본안처리도 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프랑켄탈 지방법원(팔츠) 6 민사재판부(2014년 4월 15일자 판결-6 O 114/12, BeckRS 2015, 04384)는 본안처리 확정에 대한 요구를 비용지불 의무와 함께 기각했다. 항소는 성공했다.

판결이유

19. II. 가치분절차는 본안에서 처리되었다. 왜냐하면 허용되고 이유 있는 원고의 라인란트 팔츠 미디어법 제11조에 근거한 청구는 2012년 4월 24일자 지방법원의 첫 번째 판결에서 명령된 2013년 7월 17일자 반론보도에 의해 최종적으로 이행되었기 때문이다.

20. 원고의 확정요구를 승인하기 위해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판시내용을 소개한다.

1. 피고의 견해와 달리 연방헌법재판소 2013년 11월 4일자 제1재판부 3지정부의 결정은 일반법원에 의해 새롭게 결정되어야 할 반론보도청구권에 관한 판결 결과에 있어서 어떠한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 그러한 구속은 헌법재판소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그의 결정에서 이미 최종적이고 확정적으로 원고에 의해 제소된 표지 위의 원보도가 사실주장 혹은 가치판단으로서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했을 경우에만 그러한 구속이 존재한다(그러한 판례에 대해서는 뮌헨 상급법원, NJW-RR 1999, 964). 하지만 이것은 발생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단지 새로운 해석과 기본법 제5조 제1항의 관점에서 원보도의 분류를 위해서만 지방법원으로 환송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을 새롭게 다룰 경우에 다른 판결이 사건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이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NJW 2014, 766[767 aE]). 앞선 사실관계에서 원문으로 재현된 2013년 11월 4일자 재판부결정 가운데 문구로 인해 다른 판단 역시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것은 파기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이유의

바탕적 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즉 판결에서 나타난 사고과정에 따라 구체적 판결결과를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vgl. Maunz/Schmidt-Bleibtreu/Klein/Bethge, 연방헌법재판소법 제31조 Rn. 96; Lechner/Zuck, 연방헌법재판소법, 6. Aufl., 제31조 Rn. 30, 특히 Fn 41 mwN). 결정이유는 이곳에서 선택된 범위선정으로서 “표지 위의 표현”과 함께 단지 보도에 포함된 의문문(“그가 그를 당시에 구조할 수 있었을까?”)만이 논의되어야 하는지 혹은 재판부가 - 그 자신의 설명에 따라 요구된 바와 같이 - 사실주장으로서의 분류 문제에 있어서 원보도를 전체로서(즉 앞선 문장 “가장 친한 친구에 관한 사망사건”과 함께 의문문의 전체적 고찰에서) 판단될 수는 없었는지 여부에 관해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다.

21. 2 a) 지속적인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민사소송에 대한 단일법의 해석과 적용은 본 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를 위해 관할권을 가진 일반 법원의 책무이다. 이것은 단지 기본법과 일치하는 그러한 규정만을 판결의 바탕으로 삼도록 허락되고 법 발견에 있어서 판결에 관련된 기본권의 의미와 사정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청의 준수 여부만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해 심사된다.(연방헌법재판소, NJW 1998, 1381[1382] mwN; 연방헌법재판소, NJW 2008, 1654=MMR 2008, 327[328]; 연방헌법재판소 18, 85=NJW 1964, 1715); 의견자유의 침해가 문제된다면, 연방헌법재판소는 모든 범위에서 문제된 표현내용이 적절하게 파악되었는지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연방헌법재판소, NJW 1991, 95[96]; 연방헌법재판소, NJW 1992, 1439[1440]).
22. b) 소송에서 원고의 반론보도요구는 헌법과 인권법상 보호되는 당사자들의 이익과의 충돌적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23. 언론사로서 피고에게 있어서 반론보도의 표지상의 공표가 기본법 제5조 제1항 및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의 하나의 심각한 침해를 나타낸다는 점이 고려되고, 그러한 침해는 라인란트 팔츠 미디어법 제11조에 따른 구성요건적 전제가 존재할 경우에만 정당화된다; 여기에서 특히 원보도가 독자에게 피할 수 없는 사실주장이어야 한다는 사실이 이에 속한다(연방헌법재판소, NJW 2014, 766; 연방헌법재판소, NJW 2008, 1654=MMR 2008, 327[328, 330]; 연방헌법재판소, NJW 1998, 1381[1382f.]).

24. 피고의 의견 및 출판자유권에 대해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문 및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을 통해 보장되는 원고의 인격권 보호 및 사적 영역 보호의 이익이 형량되어야 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이러한 미디어의 작용영역에서 원고의 개인적 권리 보호를 위해 기여한다. 반론보도청구권은 한 개인의 인격적 사안들의 언론에서의 토론을 통해 우려되는 위협, 그리고, 그에 관한 사안들을 부적절하게 표현한 것으로 그에게 보이지만, 대개는 동일한 언론작용에 대한 희망과 함께 맞설 수 없는 위험 앞에서 그를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격차들의 조정을 위해 일반적 인격권(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조 제1항)에서 한 개인을 미디어의 개인적 영역으로의 영향에 대해 효과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생겨난다. 미디어에서의 한 발언에 의해 관련된 사람은 자신의 발언과 함께 그에 맞설 법적으로 보장된 가능성을 가진다는 것이 이에 속한다. 이러한 보호는 동시에 통상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보장된 자유로운 개인의 그리고 공공의 의견형성에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독자에게 정보 외에도 언론을 통해 당사자의 관점 역시 전달되기 때문이다(연방헌법재판소, NJW 1998, 1381 [1382] mwN; 연방헌법재판소, NJW 1983, 1179 [1980]).
25. 마찬가지로 유럽인권법원의 판례에서 언론보도는 한편으로는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에 따라 의견자유에 대한 언론권이,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의 의미상 “사생활”의 보호에 대한 당사자 권리에 대해 형량이 이뤄져야 하며 이때 보도가 공적 이익의 토론에 기여했는지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한 관점이라는 점이 인정되었다(vgl. 가령 유럽인권법원, NJW 2013, 768 [770]-Standard Verlags-GmbH/Oesterreich Nr. 3 mwN). 특히 반론권에 관해 이러한 청구권은 게다가 언론보도 대상자의 자유로운 의견표현권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유럽인권협약 제10조 제1항의 보호범위에 해당한다고 설시했다; 이것은 당사자가 잘못된 정보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이유를 가지며, 그 밖에 의견다양성이 확보되어야 한다(유럽인권법원, NJW-RR 2013, 1132 [1135] Rn. 66-Kaperzynski/Polen).
26. c) 언론자유와 사적 영역의 보호 사이의 형량에 있어서는 공공성과 관련되는 문제에서의 정신적 투쟁에의 기여가 관계될수록 의견자유와 출판자유와 기본권 내지 협약상 권리(기본법 제5조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는 더 큰 비중이 따라온다(유럽인

권법원의 표현에서는 : 공익의 토론에의 기여). 그에 반해 언론자유의 보장은 발언이 직접 사익에 향하고 개인적, 즉 경제적 거래에서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해 공표될 수록 더욱 더 미미한 비중이 따라오게 된다(연방통상법원, NJW 2015, 782=GRUR 2015, 92 [94, 95] Rn. 20 mwN). 언론보도가 단지 유명인에 관한 특정 독자들의 호기심만을 만족시키고자 하고 높은 당사자의 지명도에도 불구하고 사회를 위한 그 어떤 공적 이익의 토론에도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형량에 있어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사적 영역의 보호가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연방헌법재판소, NJW 1973, 1221 [1224]; 연방헌법재판소, NJW 1998, 1381 [1384]; 연방통상법원, NJW 2007, 1977 [1979] mwN; 유럽인권법원, NJW 2004, 2647 [2650], 특히 Rn. 64-67-von Hannover/Deutschland Nr. 1; 유럽인권법원, NJW 2010, 751 [752]-Standard Verlags-GmbH/Oesterreich Nr. 2; 유럽인권법원, NJW 2012, 1053 [1056], 특히 Rn. 109와 110 von Hannover/Deutschland Nr. 2).

27. 3. 본 사례에 앞서 제시된 원칙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J-친한 친구에 관한 사망사건-그가 그를 당시에 구조할 수 있었을까?”라는 표지 보도는 잡지 W의 평범한 독자들에게는 그 표현의 적절한 해석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재판부의 확고한 확신에서 자체적으로, 즉 단지 잡지 내의 기사와 상관없이 분명한 독자적인 사실주장을 내포하고 있다. 피고는 그것은 단지 법적 평가에서는 가치판단과 동일시되고 그로 인해 반론보도가 요구될 수 없는 하나의 “순수한” 질문을 제기한 것이라고 성과 없이 주장했다.
28. a) 진술내용의 파악에 있어서 이의제기된 표현은 편견 없는 평범한 독자들의 이해와 일반적인 언어 사용에서 시작해서 항상 그것이 속한 전체적 맥락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표현이 놓여진 맥락에서 개별적 구성부분(여기에서: 질문형태로 작성된 보도의 두 번째 문장)을 떼어내서 순수한 별도의 고찰에 이르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질문 문장의 분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연방통상법원, NJW 2015, 778=GRUR 2015, 96 Rn. 19 mwN).
29. b) 잡지 W는 소위 통속주간지 혹은 옐로우 출판 장르에 속한다. 2012년 2월 29일자 표지 위의 원고에 관한 보도의 수용자들은 대부분 “표지 - 혹은 가판대 - 독자”(이

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 NJW 1998, 1381 [1384]), 즉 가판대나 슈퍼마켓, 주유소 등등의 잡지판매대 방문자이고, 그들은 화보주간지의 구입자들로 간주되거나 어쨌든 관련 상품들에 관심을 기울일 준비가 되어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원보도의 의미 해석은 이러한 독자들의 이해에 맞춰져야 한다.

30. c) 나아가 해석에 있어서 보도 역시 하나의 구체적인 질문 문장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재판부는 질문은 어떠한 진술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진술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을 통해 가치평가와 사실주장으로부터 구별된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순수한” 질문은 독자적 의미의 범주를 나타낸다. 그것은 가치평가로도 사실주장으로도 분류될 수 없지만, 진실과 허위의 기준에서 측정될 수 없기 때문에 가치평가와 동일시 된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광의의 질문 개념에서 시작될 수 있다(연방헌법재판소, NJW 2014, 766 [767] mwN).
31. 그럼에도 모든 질문 형태로 작성된 문장이 “순수한” 질문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질문문장이 제3자를 통한 대답으로 향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나 다양한 대답을 위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면, 잘 알려진 “수사적” 질문으로서의 지칭과 상관없이 그것은 실제로는 질문이 아닌 하나의 가치평가이거나 사실주장이다(연방통상법원, NJW 2015, 778=GRUR 2015, 96 Rn. 22 mwN).
32. 그에 따라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맥락과 관련된 질문제기의 해석에서 “순수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의 “수사적” 질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단지 질문형태로 치장된 사실주장의 근거를 가진 표현이기 때문이다(vgl. 가령 연방통상법원, NJW 2004, 1034-“우도 워르겐스가 캐롤라인과 침대에서?”; 칼스루헤 상급법원, NJOZ 2006, 3192-“결혼식 날 밤에 파경이?”;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 상급법원, ZUM 1992, 361-“끝없는 수술실의 날림수술?”; 칼스루헤 상급법원, 2013년 10월 25일자 판결-14 U5/12, BeckRS 2014, 03869, “연애-위기?”; 뮌헨 상급법원, 2014년 7월 31일자 판결-18 U 308/14, BeckRS 2014, 18546-“파경과 사고-드라마-그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
33. d) 여기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피고 잡지 표지 위의 보도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로이다.

34. 왜냐하면 보도를 접한 평균 독자의 결정적 이해에 따르면, 구조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지 직접적이고 커다란 글자체로 앞에서 의도적으로 강조된 “사망사건”에 대한 진술과의 협력에서만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의 인격과 관련지은 숨겨진 사실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그 진술은 -객관적으로 진실증명에 접근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적 종류이고 따라서 반론보도가 가능하다.
35. 이것은 이미 질문 문장 그 자체의 내용에 적용된다. 원고가 그의 친구를 “당시에” 구조할 수 있었는지 여부의 질문제기는 의심의 여지없이 앞서 보도된 “사망사건”과 관련된다. 왜냐하면 “당시”라는 단어를 통해 원보도의 두 문장들이 이 질문은 이성적으로 단지 “사망사건”의 시점에 관련된 것으로서 파악될 수 있다는 점과 결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성적인 평균의 표지 독자들에게는 동시에 피할 수 없는 사실적 추론결과로서 -다툼이 없지는 않지만- 제목처럼 강조된 “사망사건” 시점에 원고는 여전히 사망한 친구와 개인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점과 그는 “드라마틱한” 친구의 죽음에 관한 사건에 개입되었다는 점이 떠오른다.
36. 더 나아가 그 질문은 결정적으로 독자층에게, 재판부의 확신에 따르면, 독자들에게 그것은 처음부터 완전히 의미 없는 것으로서 제시되지는 않았다고 파악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숨겨진 주장, 질문 제기에서는 어쨌든 일종의 수많은 사실적 종류의 근거가 존재한다는 점을 전달했고, 그것은 원고가 - 질문을 받은 독자를 통한 판단에 따라 : 네, 아니요 혹은 어쩌면 - 자신의 행위를 통해 그의 친구를 경우에 따라서는 구조할 수 있었다는 정도의 사실이었다. 다른 단어들과 함께 표현했다 : 표지 보도는 이미 그 자체로 보더라도 그 안에 암시된, 하지만 더 자세히 전달되지는 않은 사실적 사정, 원고가 그를 위해 당시에 가능한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친구의 죽음을 저지할 수 있었을지 여부를 질문 제기에 있어서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그런 사실적 사정들이 존재한다는 인상을 불러일으킨다. 동시에 독자에게는 그에게 문제제기가 그럴듯해 보이게 하는 자세한 실제의 개별 사실들이 잡지 안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그 결과 독자는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 암시되었다. 따라서 여기서의 표지 보도는 이에 대해 반론보도가 접근할 수 있는 사실적 내용을 가진 표현이다.

37. e) 표지에서 일깨워진, 앞서 묘사된 사실적 인상으로 인한 원고의 반론보도청구에 잡지 내부의 기사에서 원고의 같은 반 친구의 사망에 관한 사건들과 어떠한 관련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피고에 의해 제기된 질문은 그 때문에 그 자신의 보도에 따르더라도 근거가 없는 것이라는 점에 모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질문은 적극적으로 모든 사실적 근거가 날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해 보도는 잡지 안에서 비로소 알게 되어야 하고, 바로 그것은 통상 피고에 의해 추구되는 잡지구매를 전제하는 것이고 대부분의 잡지독자들에게 처음부터 그런 사정이 들어맞지는 않는다.
38. 본 건에서 질문 형식을 통해 행해진 통속적인 표지보도를 통해 일깨워진 사실의 인상이 잡지 내부의 기사내용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다는 평가에서, 재판부는 유럽인권법원 2014년 4월 29일자 “Salumaeki 대 핀란드”(불만신청. Nr. 23605/09, 영어로는 데이터뱅크 HUDOC에서 불러올 수 있음; Kurzreferat von Orlova, MMR-Aktuell 2014, 358593)와의 일치된 관점에서 판단했다.
39. 그 점에서 유럽인권법원은 내국법원의 관점, 즉 - 질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사실 주장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신문 표제 위의 헤드라인 보도(구체적인 사건에서: 한 범죄에 대한 유명인의 관련성의 가정)는 그에 속한 기사의 텍스트 내에서 모든 요소들의 정확한 서술을 통해서 비로소 제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했다(vgl. 특히 Rn. 57-59).
40. 일반적으로 2012년 2월 29일자 원보도의 반론보도 가능성을 부정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다채로운 잡지들의 표지 위에서 유명인에 대한 통속언론의 독자문의에 질문 제기 - 여기처럼 - 가 평범한 이성적 독자들의 관점에서 숨겨진 사실을 포함할 경우에 조차 그리고 단지 잡지 내에서 질문제기에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 밝혀진 경우에 “순수한” 질문으로서의 특권을 부여한다면, 거기에는 재판부의 법적 확신에 따르면, 하나의 의문부호 저널리즘 내지는 억측 저널리즘에 당사자의 인격을 통해 정해진 경계의 위반이 존재할 것이다. 대중에게 알려진 인물 역시 오락잡지에 의해 세력 확장의 목적으로 되지 않을 청구권 그리고 그와 함께 자신의 상업적 이익의 추구를 위해 공개적 논의의 단순한 대상 및 근거 없는 억측의 단순한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할 청구권을 가진다(vgl. 연방헌법재판소, NJW 1983, 1179 [1180]=GRUR 1983,

316). 미디어에 있어서 어떠한 광범위한 제재효과에서 출발하지는 않는 반론보도청구권은 그런 점에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형성한다. 이것은 소송에서 피고에 의해 주장되지도 않고, 평가 대상인 표지 보도가 그 자체로 언론의 “공적 감시권”으로서 대변할 어떠한 공적 이익의 문제에 대한 여론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이 분명하지도 않을수록 더욱 더 유효하다(vgl. 유럽인권법원, NJW 2010, 751 [753] Rn. 52-Standard Verlags-GmbH/Oestreich Nr. 2; 연방통상법원, NJW 2008, 3141 [3142] = GRUR 2008, 1020). 그 때문에 여기서 증가된 보호필요성이 피고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41. f) 라인란트 팔츠 미디어법 제11조에 따른 반론보도청구권을 위한 전제는 그밖에도 존재한다.
42. 원고가 그의 친한 친구를 구조할 수 있었다는 추측을 위한 사실적 근거가 존재한다는 인상의 환기는 인격권상으로 중요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평판 침해 혹은 명예훼손과 결부되는 것 없이도 원고의 인물에 관한 독자들의 이미지가 영향을 받기 때문이고 그것은 사회적 존중청구에 대해 영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쉽사리 반론보도에 관한 원고의 정당한 이익이 생겨난다(라인란트 팔츠 미디어법 제11조 제3항 제1호).
43. 표지 위에 원보도가 공표되었기 때문에 무기대등의 원칙상 표지위에서 반박이 허용된다.
44. 지방법원이 그의 2012년 4월 24일자 판결에서 신청취지에 따라 결정한 반론보도의 활자체와 활자크기에 대한 명령들은 라인란트 팔츠 미디어법 제11조 제2항의 구성요건표지와 일치한다(“동일한 머리기사”, “동일한 활자체”).
45. 연방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라 “표지는 반론보도의 범위와 머리 기사를 통해 특히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보도를 게재하고 독자의 관심을 자극할 잡지의 정체성을 실현하는 그의 기능을 잃지 않는다”(연방헌법재판소, NJW 1998, 1381 [1384])는 점을 통해 언론자유가 고려되는 한, 기본법 제5조 제1항 제2문의 침해 역시 주어지지 않는다. 지방법원에 의해 판결된 반론보도를 포함하고 있고 피고는 반론보도 외

에 여전히 충분한 정도로 또 다른 기사 및 사진보도를 그의 영업모델에 따라(두개의 각각 사진이 구비된 유명인에 대한 독자문의) 배치할 수 있었던 2013년 7월 17일자 W지의 표지의 관찰이 이것을 보여준다. 피고는 반론보도 본문을 동일한 활자크기에서 게재하고 다시 한 번 임의로 추가내용을 보완("Y씨는 옳다. 편집부")했다는 사정이 피고가 결국 이것을 다르게 보지 않았다는 점을 위한 증거로서 암시될 수 있다.

46. 4. 피고가 단지 그에 대해 생겨난 이행강제금 결정의 압박 하에서 게재를 행했을까라도, 2013년 7월 17일자 W지의 표지 위의 반론보도 공표를 통해 본안에서 가치분 절차의 종결이 일어난다.
47. 가치분 선고에 따른 반론보도의 공표가 본안에서 가치분절차의 종결로 이르게 되는지 여부의 문제는, 그것이 - 여기처럼 - 강제집행의 회피를 위해 행해졌을 때, 상급법원의 판결에서 그리고 문헌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입장의 상황에 관하여는 코블렌츠 상급법원, NJOZ 2006, 1176).
48. 재판부는 그 문제를 인정하고 코블렌츠 상급법원(NJOZ 2006, 1176)의 적합한 속고를 근거 제시를 위해 동조한다. 그에 따르면 채무자는 규정에 따른 반론보도의 공표가 더 이상 그의 이행을 반환청구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점이 결정적이다. 공표와 함께 반론보도는 독자들에게 알려졌고 그와 함께 형성된 인상을 더 이상 역행하게 만들 수는 없다. 반론보도의 공표에 따라 이행의 반환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면, 채권자의 - 정당한 - 청구는 성취되었고 가치분 절차는 본안에서 처리되었다. 사건에서 판결에 대한 가치분 피신청인의 권리는 - 본 건에서처럼 - 이러한 방식으로 반론보도 요구의 이유유무를 제기하기 위해 종결선언에 찬성하지 않는 것이 그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것을 통해 보장된다.